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9. 29.]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9.2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화성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영구임대주택 136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9.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 동	구조 및 난방방식	입주 예정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약자용			
			기타 공용	주차장								
26A	26.8	13.9755	2.5368	9.7449	53.0572	106	22	84	-	506 동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23.10월 (예정)
26A1 (주거약자용)						30	-	-	30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6A1형(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 영구임대주택(26A, 26A1) 세대 내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3.10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적용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6A 26A1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2,672,000	133,600	2,538,400	53,220	(+) 4,000,000	6,672,000	33,220
						(-) 1,000,000	1,672,000	55,300
	나군 (일반 등)	12,919,000	645,950	12,273,050	115,640	(+) 13,000,000	25,919,000	50,640
						(-) 9,000,000	3,919,000	134,39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공고문 「5.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	
			온라인계약	현장계약
22. 10. 11(화) ~ 10. 14(금) (09:00~18:00)	**화성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3. 1. 27(금) 17:00 이후** 문자발송 및 LH청약센터 (apply.lh.or.kr)	**23. 2. 7(화) 10:00 ~ 2. 8(수) 17: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23. 2. 9(목)** (10:00~16:00) LH 경기지역본부

■ 입주자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화성시 내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화성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
→ **계약체결**
(LH)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이 가능한 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된 동호수는 LH청약센터 및 휴대폰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탈락된 신청자에게는 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는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 시 가점사항에 포함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나,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단,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A1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table>
<tr><th>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소득</td><td>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table>
<tr><th>가구원수</th><th>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th><th>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th><th>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th></tr>
<tr><td>1인가구</td><td>2,248,479원 이하
(70% 적용 금액)</td><td>2,890,902원 이하
(90% 적용 금액)</td><td>3,854,536원 이하
(120% 적용 금액)</td></tr>
<tr><td>2인가구</td><td>2,906,622원 이하
(60% 적용 금액)</td><td>3,875,496원 이하
(80% 적용 금액)</td><td>5,328,807원 이하
(110% 적용 금액)</td></tr>
<tr><td>3인가구</td><td>3,209,283원 이하</td><td>4,492,996원 이하</td><td>6,418,566원 이하</td></tr>
<tr><td>4인가구</td><td>3,600,405원 이하</td><td>5,040,566원 이하</td><td>7,200,809원 이하</td></tr>
<tr><td>5인가구</td><td>3,663,036원 이하</td><td>5,128,250원 이하</td><td>7,326,072원 이하</td></tr>
<tr><td>6인가구</td><td>3,889,913원 이하</td><td>5,445,878원 이하</td><td>7,779,825원 이하</td></tr>
<tr><td>7인가구</td><td>4,116,789원 이하</td><td>5,763,505원 이하</td><td>8,233,578원 이하</td></tr>
</table>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td></tr>
<tr><td>자산</td><td>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td></tr>
</tabl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26A	22	11	11	별도배정 호수 없음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1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구분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화성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유의사항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 주택관리번호 : 2022000663]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선택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 위	내 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우선공급 중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화성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 연령 높은 사람	추첨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 배점기준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배점(100점)</th><th>배점기준(대상자)</th></tr>
<tr><td rowspan="5">1. 화성시 거주기간
(30점)</td><td>1년 미만</td><td>22</td><td rowspan="5">▶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9.29.)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td></tr>
<tr><td>1년 이상~5년 미만</td><td>24</td></tr>
<tr><td>5년 이상~10년 미만</td><td>26</td></tr>
<tr><td>10년 이상~15년 미만</td><td>28</td></tr>
<tr><td>15년 이상</td><td>30</td></tr>
<tr><td rowspan="4">2. 신청자 연령
(25점)</td><td>만 40세 미만</td><td>19</td><td rowspan="4">▶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td></tr>
<tr><td>만 40세 이상~만 50세 미만</td><td>21</td></tr>
<tr><td>만 50세 이상~만 60세 미만</td><td>23</td></tr>
<tr><td>만 60세 이상</td><td>25</td></tr>
<tr><td rowspan="4">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30점)</td><td>1~2인</td><td>24</td><td rowspan="4">▶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td></tr>
<tr><td>3인</td><td>26</td></tr>
<tr><td>4인</td><td>28</td></tr>
<tr><td>5인 이상</td><td>30</td></tr>
<tr><td rowspan="4">4. 가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td><td colspan="2">15
(유형 3가지)</td><td rowspan="3">▶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td></tr>
<tr><td colspan="2">13
(유형 2가지)</td></tr>
<tr><td colspan="2">11
(유형 1가지)</td></tr>
<tr><td colspan="2">7</td><td>▶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td></tr>
</table>

6.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구분		배점(10점)	배점기준(대상자)
1. **화성시 거주기간** (3점)	1년 미만	**1**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9.29.)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2**	
	5년 이상	**3**	
2. **신청자 연령** (3점)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	**1**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70세 이상~만75세 미만	**2**	
	만75세 이상	**3**	
3. **세대구성원수** (1점)	2인 이상 (신청자포함)	**1**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4. **장애등급**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세대원 포함 ※ 본 공고문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참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주거약자용) : **배점 합산**(위 배점기준표 참조) → **추첨**

7.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9.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별지1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2호]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별지3호]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지4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5호]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해 당 자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공사양식 [별지6-1,6-2호]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3. 1. 27(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결과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계약기간 : 2023. 2. 7(화) 10:00 ~ 2023. 2. 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	【1차 SMS】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로그인(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계약〔계약기간 : 2023. 2. 9(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계약장소 :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완납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 시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별지7호]),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전화번호 및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구분	유의사항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복 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2년의 경우 3,557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내·외부 여건** - 현재 토지이용계획도면과 최종 토지이용계획도면은 당해 사업지구의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 진행 지구이므로 입주 후에도 주변도로, 조경·조성공사,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및 교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개설계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지연·취소될 수 있음 - 화성비봉 사업지구 내 학생배치 여건, 학생유입 규모 변동 등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및 교육정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해당 교육지원

구분	유의사항
	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름 - 지구 내 학교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상업시설 및 공공청사(소방소 등), 편의시설 등의 설치는 해당부지 판매일정 및 매수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서울시 중심으로부터 남측 약 35km 지점에 위치하며, 사업지구 동측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존재하며, 남측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지방도 313호선이 입지하고 있으며, 시도78호선이 사업지구를 남북으로 통과하며, 사업지구 북측에서 3km이내 야목역(수인분당선)이 위치함 - 인근 지구로는 어천역이 있는 '화성어천지구' 및 화성시청이 있는 '화성남양뉴타운'이 존재함 - 본 단지는 화성비봉지구 내의 기착공 및 미착공 필지가 인접하여, 입주 후 공사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사 차량 통행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북측에 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유소'가 존재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지구내에 위치하지 않음 - 사업지구 북측에서 3km 이내에 市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남동측 반경 1.3km 이내 목장 및 과수원이 있음 - 단지 남측 직선 600m거리에 왕래봉산 분묘가 위치함 - 단지 동측 직선 400m거리에 소형공장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서쪽 직선 3km 거리에 양노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 트럭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인근 군비행장이 위치하여 비행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비봉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여건**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 및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실 주변 501, 502동, 상가동 인근동(동)은 발전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생활권의 침해를 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동력 흡출기와 제연휀이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차량도로가 있으며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 및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 조명(503동, 504동 측벽 LED C.I 로고)

구분	유의사항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이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재활용품보관소는 지상 6개소 계획되어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음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주변 1층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동 전면, 후면, 조경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각 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수목, 시설물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 주변에 설치예정이나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택배보관함은 504동 1층, 그 외동은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기기 가동 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주동진입 경사로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504동 제외)**으로 단지 배치 상 동별로 주차 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일부구간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구분함 - 주민복지시설(어린이집, 피트니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경비실, 경로당, 사회적기업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는 2개소(차량 출입구1개소, 보행자 출입구 1개소)이며, 출구에 차양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차양의 재질에 따라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구분	유의사항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명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본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주의 요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전동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며, 일부세대는 설치된 태양광 모듈 빛 반사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1대(2CH), 과금형 콘센트 9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8,9항 및 제16조)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501, 503, 506동 옥상과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 이상**입니다.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 개인의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욕실(UBR)이 설치되어 욕실문 개폐 시 내·외부 압력차에 의해 천장점검구의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강한 충격 시 파손 및 울림소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유의사항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거실 및 각 침실에는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상하부장 후면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고 신발장 후면에는 벽도배가 시공되지 않음 -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배치를 위한 냉장고장이 별도 설치되지 않음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 세대에는 가스공급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취사용 가스레인지, 가스 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 기반의 기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6m², 29m² 2구형 전기쿡탑 / 36m², 44m² : 3구형 전기쿡탑) - 각 평형별로 현관의 신발장 설치 형태가 상이함 - 아파트 세대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음 - 벽/바닥타일 등은 실제 시공 및 생산과정에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스테이플 건(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에어컨 실외기 루버는 수동으로 작동되며, 계절에 따라 입주자가 직접 개폐하여야 함 - 발코니 샤시의 개폐방향은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세탁용 수도꼭지가 설치됨 - 발코니 분절형 창호 설치로 별도 발코니 난간대는 설치되지 않음,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색상 및 무늬는 자재수급(선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고,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함

구분	유의사항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팸플릿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면의 환기구 및 창호 개폐가능 여부 등의 세부적인 표기는 생략되었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생은 (가칭)비봉1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나, (가칭)비봉1초등학교는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단지의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는 불가하여 개교 전까지 인근 비봉초등학교로 임시배치할 예정입니다. 단, 비봉초등학교까지 통학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는 입주민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해당 초등학교와 협의 예정입니다. - 중학생은 비봉중학군[비봉중, (가칭)비봉1중]에,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은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협의사항은 2023년 10월(입주시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관련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자는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자는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화성비봉 A-5	한국토지주택공사	SG신성건설(주) 진산건설(주) 성일기계(주) 신한전력(주) 세종텔레콤(주)	해당없음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업체)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신청할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천장에 설치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공고문 별도 첨부(별지 8호)

▶ 신청기간 : **2023. 2. 7 ~ 2. 9**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3. 2. 9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비봉 A-5블록 담당자 앞"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6.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리플렛 배부처	.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29.

화 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별지1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앞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주택	단지명	**화성비봉 A-5블록**	전용면적	☐ **26A** (26.8㎡)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우선공급	☐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시행규칙 별표3 2호 다목) **수급자 중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자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혼인신고일 (. .) ②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회 ☐ (시행규칙 별표3 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일반공급신청순위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위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 만65세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일반공급신청순위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70%, 2명인 경우 60%)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2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1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뒷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우선공급 중 다목_신혼부부에 적용)						
구분 및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3점	**2점**	**1점**			
미성년자녀수 (태아포함)	3명이상	2명	1명			
화성시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6회이상			
혼인기간	3년이내	5년이내	7년이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 우선공급 중 가목_국가유공자등에 적용)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화성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이상~5년 미만	**24**			
	5년이상~10년 미만	**26**			
	10년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만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7: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7: 귀환국군포로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별지1호]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앞면]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화성비봉 A-5블록	전용면적	□ 26A1 (26.8㎡)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해당 시.도/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주거약자용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4순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1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1호]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뒷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주거약자용 주택 적용)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화성시 거주기간** (3점)	1년 미만	**1**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2**			
	5년 이상	**3**			
2. **신청자 연령** (3점)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75세이상	**3**			
3. **세대구성원수** (1점)	2인 이상(신청자포함)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 장애등급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별지2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아래 사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에 ☑ 표시 하세요.**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추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22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3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앞면〕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본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뒷면)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4호]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2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임대주택) 타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2022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정보·금융정보	☐	상기 (1), (2)는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상기 (1), (2)는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2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별지6-2호]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2022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7호] 위임장

위 임 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임 내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2 년 월 일

위 임 인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붙 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 8호〕 아래 대상자가 희망 시 계약기간에 제출 〔26A1형(주거약자용) 당첨자만 신청 가능〕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선택사항 설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당첨자 성 명		2. 담청자 생년월일	-
3. 주 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아파트 동 호 (규모 : 전용면적 ㎡)		
5. 주거약자 성 명		6. 주거약자 생년월일	-

7. 신청 내용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대상	신청
	현관	①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거실/침실	② 거실조명밝기	·거실/침실 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기타	③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 편의시설 제공대상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2에 의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서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				
8. 제출 서류	1)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부. 2)주민등록 등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8호〕 아래 대상자가 희망 시 계약기간 내 제출 〔26A형 당첨자만 신청 가능〕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세대주 성 명		2. 세대주 생년월일	-
3. 주 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아파트 동 호 (규모 : 전용면적 ㎡)		
5. 장애인 성 명		6. 장애인 생년월일	-
7. 구 분	①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② 청각장애인(), ③ 시각장애인()		

8. 신청 내용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	대 상
현관	①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①
거실	② 야간센서등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①
기타	③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	③

※ 편의증진 시설 제공대상
·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세대주가 희망하는 가구

9. 제출 서류

1) 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증진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